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서울특별시(시설계획과장)
(경유)
제목 관원회신(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)

1. 시설계획과-809(2018.1.19.) 관련입니다.

2. 질의요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소규모주택정비법”이라 함)에 따른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을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?

3. 회신내용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이라 함) 제56제1항 단서에서는 도시·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는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이란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,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도시정비법”이라 함)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도시·군계획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, 도시정비법 개정(2017.2.9. 개정, 2018.2.9. 시행)에 따라 정비사업의 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외(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)되었으므로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사무관대우 김대영 시설사무관 오원택 도시정책과 과장 전결 02/20 정익경

협조자

시행 도시정책과-1606 (2018.02.20.) 접수 시설계획과-2025 (2018.2.20.)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전화 044-201-3717 /전송 044-201-5659 / moct@molit.go.kr / 대시민공개